

# 2025년 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
대구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3. 17

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

## □ 사업개요

### ○ 사업목적

- 지역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한 조합·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기회 창출
-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판로확대 및 경영성과 제고

### ○ 사업명 : 「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」

### ○ 지원대상 : 주무관청이 대구광역시인 中企협동조합

\*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

### ○ 사업기간 : 2025년 3월 ~ 12월

### ○ 지원분야

	사업명	사업내용	총 예산
1	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	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 지원 (R&D, 마케팅, 브랜드, 교육 등) ➔ 조합당 최대 3백만원 이내	21,080천원
2	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	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% 지원 ➔ 조합당 1회 1백만원 이내 (연 2회까지)	4,000천원

## □ 지원 분야별 사업내용

### 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

- 목 적 :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마련 및 공동사업 역량 강화
- 사업내용 : 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 지원

① 공동 R&D	업종 공통 기술개발 수행, R&D 컨설팅, 시제품 개발, R&D 성과물 검증을 위한 시험/분석 등
② 브랜드·상표	브랜드 컨설팅, 개발 및 등록, 사후관리 등
③ 공동 마케팅	홍보용 카탈로그·영상 제작, 전시회·박람회 참가, 홈페이지 구축 및 기능개선, 온·오프라인 매체 홍보 등
④ 수출	업종 및 사업별 컨소시엄 구성, 해외 전시회 등 파견
⑤ 교육·워크숍	경영/경제/세무/AI 교육, 우수사례 탐방 워크숍·세미나
⑥ 기타	업계 현안발굴을 위한 연구용역·정책조사, 협동조합 전용 시스템(회계·예산프로그램 등 IT분야) 기능 개선 등

- 총 지원예산 : 21,080천원 (조합당 최대 300만원)

- 협동조합은 신청사업 전체예산의 최소 10% 이상 자부담\* 필수

\* 총 사업금액 (지원금 + 조합부담금) 기준 10% 이상을 의미

- 선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원예산 변동될 수 있으며, 위원회 종료 후 최종 지원액 결정·조합 통보

- 추진절차



○ 선정위원회 평가 사항

- 평가지표 : 정량평가 20점 + 정성평가 80점 = 총 100점

- 점수비중

▶ (정량평가 20점) 협동조합 관리 및 법정 의무사항 준수 항목

\* 중앙회 지역본부에서 조합포털의 정보를 기준으로 자체 평가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) 기본 정보등록 (5점)          | 2) 임원[이사장] 선임 보고 (5점) |
| 3) 금년도 총회 개최 및 결과보고 (5점) | 4) 조합원 변동보고 (5점)      |

▶ (정성평가 80점) 사업 필요성, 타당성, 기대효과 등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) 사업 필요성 및 창의성 + 내용 충실성 및 타당성 (50점) |
| 2)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기대효과 (30점)          |

○ 필요서류

사업신청 시	· 신청 공문 · 정보활용동의서	· 사업신청서 · 사업자등록증
결과보고 시	· 결과보고 공문 · 지출 증빙(계약서, 견적서, 세금계산서, 이체영수증 등)	· 결과보고서

○ 유의사항

- [신청불가] 이사장·상근이사 전체 공석, 휴면, 총회 미개최 조합
- [사용불가] 원자재·장비·시설·건물 구매 및 임대, 차량 구입, 조합 운영비(인건비, 복지비 등), 답례품 등 사업 무관 비용
- 선정 이후 조합 부실운영 발생, 법정 의무사항 미준수 등이 확인될 경우 중도 지원취소 조치하며 차년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
- 선정 이후 중도 포기할 경우 차년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
- 강사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적용
- \* 강사 이력서, 강의확인서, 강사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

- 회의비(식비)는 대구시 예산편성지침 단가(1인당 1식 8,000원) 적용
- 통역·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적용
- 중간점검은 유선·이메일·조합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실시
-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(사업일정 미준수 등) 최대 2회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선정취소 조치

▶ 1차 현장점검 시 사업추진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취소

예) 사업계획 상 6월초 판매전 개최임에도 7월말까지 미개최  
→ 현장점검 실시 → 추진의사가 없을 경우 즉시 취소

▶ 1차 현장점검 시 사업추진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후 1개월 간 미추진 시 2차 현장점검 후 선정취소 검토

- 사업내용 변경은 반드시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승인 후 추진할 것
  - \* 사업 일자, 장소 등 단순변경은 승인 불필요, 사업명이나 구체적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승인절차 필요하며 내부검토 후 불승인될 수 있음
  - ➔ 불승인 시 조합은 기존 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중도포기 결정 필요
- 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 지출증빙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서류미제출 시 지원취소
- 계약 상대방이 조합 이사장 및 임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
- 리플렛·책자·영상 등 제작된 실물은 지역본부로 별도 제출
- 11월 말까지 결과보고 미이행 시 중도 포기로 간주(취소 조치)

**※ 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 예시는 별첨 “신청양식” 참고**

## 2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

- 목 적 : 조합 간 협업을 통한 신규판로 개척,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
- 사업내용 : 中企협동조합 간 계약을 통해 물품 등을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%를 지원
- 지원대상 : 대구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
  - 대구 조합 간 거래 : 구매하는 대구 협동조합 지원
  - 대구 조합과 타지역 조합 거래 : 구매·판매하는 대구 협동조합 지원

### [예시 1] 대구지역 내 협동조합 간 거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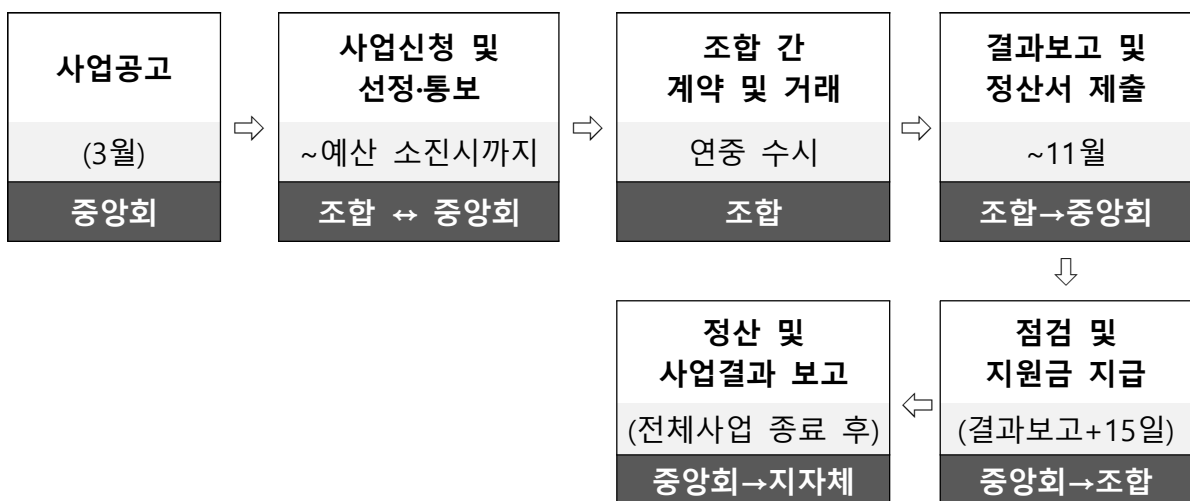
- 대구A조합이 대구B조합을 통해 산업용 장갑 2,000만원 구매 시, 구매한 A조합에 거래금액의 10%인 100만원 지원

### [예시 2] 대구지역 협동조합과 타 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

- 대구C조합이 대한D연합회로부터 원자재 800만원 구매 시, 구매한 대구C조합에 거래금액 10%인 80만원 지원
- 대구X조합이 포장용 필름을 Y조합에 1,000만원 판매 시, 판매한 대구X조합에 거래금액 10%인 100만원 지원

- 총 지원예산 : 4,000천원 (조합당 1회 100만원 / 연 2회까지)

- 추진절차



○ 필요서류

사업신청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청공문</li> <li>· 정보활용동의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신청서</li> <li>· 사업자등록증</li> </ul>
결과보고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결과보고 공문</li> <li>· 거래 조합 간 업무협약서</li> <li>· 지출 증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합 간 계약서(거래품목, 단가, 기간, 규모 등), 견적서</li> <li>- 조합 간 세금계산서 및 금융기관 이체영수증 등</li> <li>- 거래 품목 사진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결과보고서</li> </ul>

○ 유의사항

- [신청불가] 이사장·상근이사 전체 공석, 휴면, 총회 미개최 조합
- 中企협동조합 간 거래만 인정(조합원, 개별기업과의 거래 불인정)
- 선정 이후 조합 부실운영 발생, 법정 의무사항 미준수 등이 확인될 경우 중도 지원취소 조치하며 차년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
- 선정 이후 중도 포기할 경우 차년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
- 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 지출증빙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서류미제출 시 지원취소
- 11월 말까지 결과보고 미이행 시 중도 포기로 간주(취소 조치)

**※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추진 예시는 별첨 “신청양식” 참고**

## □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	사업명	신청 기간	제출서류
1	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	공고일 ~ 4. 9(수) 18:00까지	▶ 신청공문 (붙임1) ▶ 사업신청서 (붙임2) ▶ 정보활용동의서 (붙임3) ▶ 사업자등록증
2	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	연중 수시 접수 (~예산 소진시 까지)	▶ 신청공문 (붙임4) ▶ 사업신청서 (붙임5) ▶ 정보활용동의서 (붙임3) ▶ 사업자등록증

\* 서류 양식은 별첨 “신청양식 및 참고사례” 참고

○ 제출방법 : 중앙회 담당자 이메일 ✉ [ch5608@kbiz.or.kr](mailto:ch5608@kbiz.or.kr)

-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해 접수 여부 확인요망

\* 유선으로 확인하지 않고 서류제출이 누락된 경우 추가접수 불가

- 문의 :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

☎. 053-524-2501 (내선 2063#)